

社團  
法人

# 大韓齒科醫師協會定款

## 第一章 總則

## 第二章 目的

## 第三章 組織

## 第四章 事業

## 第五章 會員

## 第六章 賞罰

## 第七章 任員 및 選舉

## 第八章 代議員 및 代議員選舉

## 第九章 理事會 및 任務

## 第十章 齒科醫師會

## 第十一章 齒科醫學會

## 第十二章 齒科機材 및 藥品審議委員會

## 第十三章 財政

## 附則

第2項 齒科醫師·醫療補助員 補修教育에 關한 事項

第3項 國民口腔保健發展에 關한 事項

第4項 醫道の 昂揚과 醫權擁護에 關한 事項

第5項 醫師의 調查研究와 醫業의 改善向上에 關한 事項

第6項 各 團體相互連絡調整과 會員間의 親睦에 關한 事項

第7項 當局에 對한 建議와 團體契約에 關한 事項

第8項 齒科機材育成發展에 關한 事項

第9項 軍齒務發展向上에 關한 事項

第10項 機關紙 및 協會誌發刊에 關한 事項

第11項 其他 本協會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 第五章 會員

第7條 本協會의 會員은 各 齒科醫師會會員으로서 구성한다.

第8條 會員은 正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區分한다.

第9條 正會員은 大韓民國의 齒科醫師, 限地齒科醫師의 免許證을 取得한 者로서 各 齒科醫師會를 通하여 入會手續을 畢하고 本協會에 登錄한 者.

第10條 名譽會員은 本協會 또는 齒科醫學界에 貢獻이 顯著하고 學識이 卓越한 者로서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된다.

第11條 會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第1項 會員은 本協會定款 및 決議를 遵守할 義務가 있다.

第2項 正會員은 年會費 및 其他 負擔金을 所屬齒科醫師會를 通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第3項 會費와 其他 義務를 完遂한 者에게는 本協會로서 會員證을 發行한다.

第4項 會員은 定款에 制定된 目的과 事業이 同一한 別個의 團體를 任意로 組織할 수 없다.

第12條 會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第1項 正會員은 選舉權과 被選舉權이 있다.

第2項 會員은 醫療行爲에 對한 學術的質疑 患者와 會員間에 發生된 諸問題에 對한 陳情 會員間에 發生된 諸問題의 調整 및 會員資格에 對한 證明과 推薦等を 本協會에 要求할 수 있다.

第3項 會計年度中會員이 自己所屬團體(齒科醫師會)로부터 他所屬團體로 진출될 때 會費完納證이 有한 者는 殘餘期間(有效)의 會費는 納付치 않는다.

## 第一章 總則

第1條 本協會는 醫療法 第58條(中央團體)에 依하여 設立한다.

第2條 本協會는 社團法人 大韓齒科醫師協會 (以下 會)라 稱한다.

第3條 本協會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第二章 目的

第4條 本協會는 國民保健의 向上을 爲하여 齒科醫學 齒科醫療 및 公衆口腔保健의 發展과 醫道の 昂揚 및 醫權의 擁護와 會員間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三章 組織

第5條 本協會는 서울特別市, 釜山市 各 道齒科醫師會 및 各 軍齒科醫師會(以下齒科醫師會라 稱함)을 둔다.

## 第四章 事業

第6條 本協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第1項 齒科醫學發展에 關한 事項

## 第六章 賞 罰

第13條 本協會會員中 學術研究 및 會務에 功績이 顯著한 者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表彰한다.

第14條 會員中 다음 各項의 1에 該當되는 자는 總會의 議決로서 醫療法施行令 第2條에 依한 醫療倫理委員會에 廻付한다.

第1項 齒科醫師의 倫理에 違背된 者

第2項 醫療關係法規를 違反한 者

第3項 本協會定款과 議決을 違反한 者

## 第七章 任員 및 選舉

第15條 本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副會長, 3名

3. 理 事 8名

4. 監 事 3名

第16條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理하고 理事會를 構成하여 그 議長이 된다.

第17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會長有故時 이를 代理한다.

第18條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여 本協會會務를 各各分掌處理한다.

第19條 監事는 必要에 따라 會務 및 財務를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第20條 會長, 副會長, 各理事(學術理事는 各分科學會長이 推薦하며 自動的으로 學術擔當 副會長이 된다) 監事의 選舉는 議長 및 各齒科醫師會代表 1名式으로 構成되 公薦委員會로부터 倍數公薦을 받아 總會에서 無記名投票에 依한 多數得點者로서 選任한다.

但 各理事選舉는 別送方法으로 할 수도 있다.

第21條 會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회에 限하여 重任할 수도 있다.

任員에 缺員이 생길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但, 會長 副會長 缺員期間이 1年이상일 때에는 次期定期總會에서 이를 補選한다.

第22條 會務(總會 및 理事會에서 受任한 事務와 其他 本協會事務一切)을 執行하기 爲하여 事務局을 設置하고 若干名의 職員을 둘 수 있다.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第23條 本協會는 理事會의 推戴에 依하여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

이의 任期는 任員의 任期와 同一하다.

第24條 本協會에 名譽會長(1名)을 두며 이는 會長團에서 推戴하고 任期는 會長의 任期와 同一하다.

## 第八章 代議員 및 總會

第25條 代議員은 代議員總會(以下 總會라 稱함)를 構成하고 그 定款에 規定된 事項을 審議한다.

第26條 代議員의 任期는 1年이며 重任도 할 수 있다. 代議員名單은 定期總會 10日前까지 本協會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27條 代議員의 數는 各齒科醫師會에서 會員數 10名中 1名의 比率로 選出되고 超過人員數 5名以上일 때 1名追加하며 各 齒科醫師會에서는 會長 1名과 總務各 1名이 代議員이 된다.

但, 會員數 10名以內인 道에서는 1名을 選出하고 各分科學會는 各各 1名式을 選出한다.

第28條 代議員은 總會出席時 各 其所屬齒科醫師會會長 및 學會長이 發行한 信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但, 代理出席時에는 委任狀을 同時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29條 本協會任員은 代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30條 代議員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고 定期總會는 1年 1회, 臨時總會는 理事會 또는 代議員數 3分の 1 以上の 要求에 依하여 議長이 召集하되 臨時總會에서는 召集한 關係事項 以外の 것을 處理하지 못한다.

第31條 總會는 在籍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32條 總會에 議長 副議長 各 1名式을 두며 이는 總會에서 各 齒科醫師會代表 1名式으로 構成된 公薦委員會로부터 倍數公薦을 받아 無記名投票 多數得點者로서 選定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第33條 議長은 總會를 司會하고 投票權은 可否同數인 데에 限하여 行使한다.

第34條 副議長은 議長을 補左하고 議長有故時 이를 代理한다.

第35條 各 齒科醫師會에서 總會에 提出할 案件은 總會 10日前까지 本協會에 文書로 件名과 要旨를 記入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第36條 緊急討議事項의 提案은 在席代議員 過半數의 動議로 成立된다. 緊急討議案件議決은 在席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한다.

第37條 總會는 會長 및 副會長의 不信任을 決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解任을 看做한다. 議決은 在席代議員 3分の 2出席에 在席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한다.

第38條 前條에 依하여 缺員된 任員補選은 直時行할 것이며 그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39條 總會에서 審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第1條 定款의 制定 또는 修正에 關한 事項

第2項 任員選舉에 關한 事項

第3項 豫算 決算에 관한 事項

第4項 事業計劃

第5項 理事會에서 附議되는 事項

第7項 議長은 議事進行上 必要하다고 認定時에는 補助委員 若干名을 任命하여 代議員總會에 報告케 할수 있다.

第40條 議決은 在席過半數로 하되 定款制定 또는 修正 決議는 在席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서 한다.

第41條 總會開催通告는 定期總會開催 2個月前 臨時總會는 1週日 前으로 한다.

### 第九章 理事會 및 任務

第42條 理事會는 總會에서 選出된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서 構成하고 會長이 召集하여 議長이 된다.

第43條 理事會는 定期 및 臨時理事會로 하고 定期理事會는 1個月에 1회 臨時理事會는 會長 또는 理事 2名 以上の 要請에 依하여 隨時로 召集한다.

第44條 理事會는 在籍過半數의 出席으로서 成立된다.

第45條 各理事는 定期理事會議時 業務報告를 하여야 한다.

第46條 理事會議의 議決은 在席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但, 擔當理事가 單獨으로 責任處理할 수 있는 緊急 事項은 會長團과 擔當理事의 專決로서 處理하고 次期理事會에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47條 必要에 따라 各 齒科醫師會의 事務監査를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行할수 있다.

第48條 理事會는 各理事로 하여금 다음 各委員會를 構成케 하고 그 委員長이 된다.

- |          |          |
|----------|----------|
| 1. 總務委員會 | 5. 國際委員會 |
| 2. 醫務委員會 | 6. 財務委員會 |
| 3. 審査委員會 | 7. 公報委員會 |
| 4. 學術委員會 | 8. 軍務委員會 |

第49條 各委員會의 任務

第1項 總務委員會

1. 對內外的 涉外關係
2. 各種行事的 準備 及 進行
3. 會員間的 親睦 및 厚生에 관한 事項
4. 各委員會에 屬하지 않는 事務一切를 管掌한다.

第2項 醫務委員會

1. 國民口腔保健 및 齒科醫療狀態에 관한 事項
2. 齒科醫療 制度 保健行政 口腔保健 施設 및 政策에 對한企劃
3. 齒科醫師制度 및 運營에 관한 事項
4. 會員實態把握

第3項 審査委員會

1. 齒科醫師 專門醫 및 醫療補助員의 資格審査에 對한 研究

2. 會員資格義務權利等에 對한 事項

3. 本協會定款齒科醫師倫理等에 對한 事項

4. 2個以上の 團體 또는 個人間的 紛爭調停

5. 齒科醫療行爲에 對한 調査 및 判定

6. 賞罰에 관한 事項

第4項 學術委員會

1. 齒科醫師 醫療補助員 補修教育에 관한 事項

2. 齒科醫師國家考試, 專門醫試驗 및 醫療補助員資格考試에 관한 事項

3. 學術發展에 對한 方案과 이의 調査報告 및 그對策의 樹立施行

4. 新設分科學會의 審査

5. 學術大會의 準備

6. 協會誌發刊의 編輯 및 出版

第5項 國際委員會

1. 涉外 外國文獻求得 및 研究

2. 國際的인 學會 및 業績交流에 관한 事項

第6項 財務委員會

1. 豫算決算의 編成

2. 財政對策의 研究調査

3. 會費徵收와 贊助金에 관한 事項

4. 財務理事는 本協會財務를 擔當한다.

第7項 公報委員會

1. 本協會發展을 爲한 出版에 관한 事項

2. 本協會公報活動에 관한 事項

第8項 軍務委員會

1. 本協會發展을 爲해 各軍支部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며 各軍支部의 發展을 위한 모든 事業을 研究計劃協助한다.

第50條 理事會는 每年代議員總會에 協會事業 및 豫算 決算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51條 各委員會는 委員을 若干名으로 하되 小委員會를 둘수 있으며 이는 擔當理事의 推薦에 依하여 理事會議決로서 會長이 委屬한다.

第52條 委員長辭任 및 解任時는 該當委員會委員도 辭任으로 看做한다.

### 第十章 大韓齒科醫師協會 各齒科醫師會

第53條 各齒科醫師會는 傘下市·區·郡에 分會를 둘수 있다. 必要에 따라 理事會承認下에 別定機關을 設置할수도 있다.

第54條 各 齒科醫師會는 本協會定款範圍內에서 各 其會則을 制定하고 本協會의 認準을 받아야 한다.

第55條 各 齒科醫師會는 總會後 1個月 以內에 開催하고 其 會議結果報告를 本協會로 15日 以內에 提出 하여야 한다.

## 第十一章 齒科醫學會

第56條 協會에는 各 分科別로 齒科醫學會를 둔다.

第57條 各 學會長은 學術委員會委員이 된다.

第58條 各 學會長은 該當學會에서 選出한다.

第59條 新設學會가 協會의 承認을 願할 때에는 學術委員會의 審査로서 理事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第60條 各學會의 會則은 이를 別途로 定한다.

## 第十二章 齒科機材 및 藥品審議委員會

第61條 審議委員會의 目的

國產品機材 藥品의 質의 向上과 規格의 科學的 審査 및 鑑定으로써 品位의 公正을 期함에 있음.

第62條 審議委員會의 構成

第1項 各分野에 學識과 德望이 있는者(10名)으로서 委員長推薦으로 理事會決議를 얻어 協會長이 任命한다.

第2項 委員長은 協會會長團中 1名을 理事會決議로서 兼任하고 幹事 1名을 委員中에서 互選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第63條 會 議

第1項 本委員會는 隨時로 會集하되 協會 또는 關係當局의 要請이 有할 때는 委員會를 即時 召集하여야 한다.

第2項 協會總務理事는 職能的으로 會議에 參席 意見を 發表할 수 있다.

第3項 委員長은 委員會의 決定事項을 本協會에 提出하여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第64條 審議委員會의 任務

1. 齒科機材의 質의 向上을 爲한 規格化와 價格調節에 關한 研究

2. 齒科資材의 需給의 調査統計에 關한 事項

3. 有害材料의 調査 및 檢査와 이의 團束對策樹立

4. 齒科機材育成發展에 關한 事項

5. FDI에 關한 事項

6. 市販齒科資材의 本會協規格의 合格與否를 審議함

第65條 委員會의 財政

本委員會의 委員出張調査 其他 事務上 必要한 一切의 費用은 財政에서 支出한다.

## 第十三章 財 政

第66條 本協會의 財政은 年會費, 負擔金과 其他 收入 金으로 充當한다.

第67條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10月 1日 부터 翌年 9月 30日 까지로 한다

第68條 各市道軍會長이 認定하는 다음 事項의 1에 該當한 會員은 所屬齒科 醫師會의 申請에 依하여 會費를 減免한다.

(但, 第1項 該當者는 免除하고 第2項 該當者는 減額한다).

- 第1項
1. 不具疾病等으로 因하여 生計가 困難한者
  2. 公職으로부터 停年退職한 者로서 關業 또는 就職이 不能한 者
  3. 滿 70歲以上의 高齡者
  4. 非開業醫로서 所得이 全無한 者

第2項 ① 認定된 病院에서 教育을 받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는 年會費의 3分之2를 減額

② 官公署, 病院, 學校等에 勤務하는 者는 年會費의 2分之1를 減額

## 附 則

本定款은 代議員 總會決議와 同時에 發効한다.

(1969年 10月 4日 改正)